

IMO 제109차 이사회(Council)

I. 일반사항

- 회의명 : IMO 제109차 이사회
(The 109th session of Council)
- 기간/장소 : '12. 11. 5~11. 9(5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II. 주요의제 목차

1. 의제 3 전략, 계획 및 개선
2. 의제 4 자원관리
3. 의제 5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4. 의제 6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보고서 검토
5. 의제 8 1977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에 관한 1993 의정서 이행 협정의 채택을 위한 2012 외교회의 보고서
6. 기타 사항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3	전략, 계획 및 개선
------	-------------

1. 2012~13년 상위이행계획에 따른 planned outputs 현황 및 기구의 계획에 관한 데이터베이스(Organizational Planning Database) 최신화
 - (개요) 2012~13년 상위이행계획에 따른 총회, 이사회와 사무국의 planned outputs의 현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수정된 보고 서식의 사용 제안에 관한 문서임

- (회의결과) 2012~13년 상위이행계획에 따른 총회, 이사회와 사무국의 planned outputs의 현황에 대하여 주목함. U.K,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많은 planned outputs들의 목표완료 연도가 “continuous”로 표시되어 있고, output 현황이 “ongoing”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함. 이사회는 목표완료연도가 “continuous”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템들에 대하여 interim output을 명시해 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 사무총장이 제안한 biennial 의제에 대한 수정된 보고 서식의 시범적 사용에 대하여 승인하였고, 제13차 전략계획작업반에서 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서식을 개정 하도록 함

2. 기국의 검토(Review) 및 개선(Reform)

- (개요) 사무총장에 의해 수립된 검토 및 개선 메커니즘에 관한 진행 현황을 제공하는 문서로 이사회에 IMO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 (회의결과) 전문위원회 개편
 - 환경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the Environment) 및 화물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Cargoes) 관련
 - 스웨덴 ESPH 사안은 환경전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화물전문위원회 산하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노르웨이, 파나마, 네덜란드 등은 동 의견에

- 대하여 지지함. 우리나라는 MEPC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기술적/과학적 논의가 환경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운항 전문 위원회(Sub-Committee on Operations) 및 SAR 회기간 작업반 관련
 - 우리나라는 COMSAR 전문위원회에서의 통신(radio communication)은 SAR(search and rescue)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회기간 작업반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논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은 무선통신은 SAR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무선통신과 SAR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외에도 몰타, 페루, 파나마, 이탈리아 등은 SAR 같은 중요한 이슈가 2년에 한 번씩 다뤄진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글라데시, 쿡 아일랜드 등은 새로운 전문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재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사회는 SAR 사안을 2년에 한 번 회기간 작업반으로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으며 동 문제에 대하여 MSC의 의견을 구하기로 함
 - Technical I 전문위원회 및 Technical II 관련
 - DE, FP, SLF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Technical I 및 Technical II 전문위원회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Technical II 전문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예상되므로 운영 시 적절히 업무가 배분되도록 고려되어야 하고, SOLAS의 관련 장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면 만재흡수선(loadline)과 어선안전(fishing vessel safety) 사안이 어디에서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3개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이를 다시 2개의 전문위원회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는 없었으며 원칙적으로 동의함
 - 협약준수(Implementation) 전문위원회 관련
 - 새로운 전문위원회의 명칭이 “Implementation”으로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업무 범위가 LEG, FAL 위원회가 다루는 협약까지 확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동 새로운 전문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FSI와 함께 MSC, MEPC에서 다루는 협약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전문위원회 개편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승인함. 단, 최종 결정 전에 관련 위원회(MSC, MEPC)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위원회에 사무총장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후(ESPH 사안, SAR 회기간 작업반, 전문위원회 명칭 등) 이를 제110차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한 회기당 개설될 수 있는 작업반의 수
 - 싱가포르, 바하마, 칠레, 라이베리아, 스페인,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한 회기에 개설될 수 있는 작업반 수를 5개로 늘릴 경우 소규모 대표단은 모든 작업반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행대로 3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사회는 현행대로 한 회기에 개설될 수 있는 작업반의 수를 3개로 한정하기로 함
 - 최대 실질 의제(substantive agenda item) 수는 10개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 따라 동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함. 또한, 현 biennium에 unplanned output을

- 추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 전문위원회보고서 서식 변경
 - 전문위원회보고서에서 배경, 논의 경과가 요약된 annotated agenda를 참조하여 문서 분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사무총장은 제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U.K, 사이프러스, 필리핀, 파나마, 그리스, U.S, 스페인 등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채택됨
 - 전문위원회보고서 및 작업반/초안작업반 보고서에 더는 논의 경과를 담지 않고 “summary of decision”의 형식으로 references, outcomes, decision만을 포함하여 작성하자는 사무총장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열띤 논쟁이 이뤄졌음. 우리나라는 보고서를 “summary of decision”의 형식으로 작성하면 더욱 상세한 논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녹음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논의 결과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반대하였으나, 2013년 초 전문위원회에서 시범적 운영을 해보자는 사이프러스의 중재안이 지지를 얻어 채택됨. 하지만 이러한 시범적 운영의 방법(어느 전문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얼마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 비용과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등)과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시범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110차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 우선순위 선별을 위한 메커니즘

- 사무총장이 제안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여러 국가가 동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총회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정책그룹(ad hoc Policy Group on Priorities)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동 메커니즘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함
- 바하마, 사이프러스, U.K는 동 메커니즘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사회 특별작업반을 통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지지함. 이에 따라 이사회는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작업반을 다음과 같은 T.O.R에 따라 2013년도 봄에 개최하기로 함
 - “C109/3/1의 우선순위선별에 관한 사무총장의 제안 및 C109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작업반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의 개발을 포함한 기구의 Planned Outputs의 우선 순위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론을 식별하고, C110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전략계획 특별작업반이 동 방법론을 2014~15년 planned outputs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 Framework)의 적용

- (개요) 위험관리기법을 상위이행계획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독일이 제안한 문서임
- (회의결과) 독일이 제안한 위험관리절차 개념에 대하여, 방글라데시, 칠레, 파나마, 스페인, U.S. 호주, 라이베리아, 스웨덴, 바하마 등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사회 작업반(CWGRM)에서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우리나라는 독일의

제안이 사무국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예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무국에 의해 수행된 위험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필리핀 등은 우리나라의 제안에 대하여 지지함

- 이사회는 독일의 제안에 대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작업반(CWGRM)에서 추가 논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원래는 CWGRM이 2013년 봄에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우선순위 선별을 위한 메커니즘(C109/3/1)과 관련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작업반이 먼저 열리게 됨에 따라, 동 CWGRM은 제28차 총회 이후인 2014~2015 biennium으로 연기됨

의제 4 자원관리

1. 상급자문(Senior advisers)의 활용에 관한 정책

- (사무총장 제안사항) 파견전문가들의 활용과 관련한 IMO의 향후 접근 방법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 절차들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 파견전문가와 관련한 요건들은 각 부서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는 가능한 신속하게 IMO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임
 - IMO의 관련 부서는 파견기관에 의해 제안된 전문가 후보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할 것이며, IMO 해당 부서에 의한 권고 및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견기관(sponsor)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될 것임
 - 파견전문가는 보통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근무를 위해 선정될 것이며 연장될 수도 있음

- 파견기관은 IMO에 파견전문가 후보의 성명, 이력서를 제공
- IMO는 파견기관에 의해 추천된 모든 후보에 대하여 심도 높은 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시험(필요한 경우) 및 인터뷰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경쟁력 있는 평가 절차를 거칠 예정임
- 파견전문가는 유엔 직원퇴직기금(UNJSPF)에 속하지 않을 것임
- 직무 수행 및 파견종료 시 귀국과 관련된 비용 등은 모두 파견기관이 부담할 것임. 비자 발급을 위한 공문 제공 및 UK 외무부(UK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에의 파견전문가 관련 보고는 IMO에 의해 이뤄질 것임
- 월급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은 파견기관에 있음
- 기타 직간접 비용(파견기간 중 의료보험, 사망, 손해, 사고에 대한 배상 등)은 파견기관에 의해 지급될 것임. 또한, 외부 훈련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은 파견기관에 있음
- 파견기관이 IMO에 기금을 제공하는 경우, IMO 월급지급체계를 통해서 지급될 수도 있을 것임
- 파견전문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검토는 기구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것임
- 파견전문가는 “Senior Advisor”를 부여받을 것이며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UN Certificate가 발급될 것임
- 파견기간 동안 IMO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놓일 것이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부로부터의 지침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 또한, 파견전문가는 국제공무원에 적합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임
- 파견전문가는 파견 기간에는 해당 기관 업무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파견전문가는 병가 및 연가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동 권리는 IMO 직원들과 같음

- 파견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연락은 IMO의 Human Resources Services를 통해 이뤄질 것임
- 파견기관은 IMO에 사무실, 컴퓨터 장비, 파견 전문가의 관리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임(파견전문가가 IMO 월급지급체계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총비용의 12%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10,000 USD)
- 파견기관 또는 IMO에 의한 2개월 사전 통보가 이뤄지는 경우, 계약이 종료됨. 하지만 파견 전문가의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경우 IMO 직원 규칙에 따라 계약이 즉시 종료됨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 **(스페인 제안사항)** 상급자문의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스페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비차별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상급자문을 파견하는 데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전문가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일부 파견기관(예, 개발도상국 등)은 이러한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비용분담 및 상호이익의 원칙(Principle of shared costs and mutual benefit): C109/4(a)/2상의 상급자문의 활용에 관한 정책은 IMO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지만, 파견기관에는 손해가 됨. 다른 국제기구의 경우(예, 유럽 기구들에서의 각국의 전문가 활용) 참조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이 있음
 - 예산 제한: 파견전문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미리 IMO에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특히 회원국이 파견 주체이면 예산상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것(annual scheme)이 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여겨짐
 - 파견기관이 전문가 파견 시 IMO에 사무실, 컴퓨터 장비, 파견전문가의 관리 등과 관련한 비용(총비용의 12% 또는 10,000 USD)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즉, 정규직 직원을 대신한 파견전문가는 IMO에 추가로 이와 같은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며, IMO는 파견 전문가의 전문가적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파견기간이 끝나고 귀국하는데 드는 비용은 파견기관이 지급할 수도 있으나, 파견전문가가 IMO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은 IMO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회의결과)**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제안한 파견 전문가 활용 정책을 승인함. 단, 파견기관이 지급해야 할 비용(파견전문가가 IMO 월급지급체계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총비용의 12%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10,000 USD)과 관련해서는 사기업으로부터 파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사기업이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려는 경우 IMO와 접촉하기 전에 해당 회원국과 상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도,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등 여러 국가의 지지를 얻어 동 의견이 채택됨
 - 상급자문의 활용정책에 대한 스페인 의견문서(C109/4(a)/4)에 대해서는 “비차별 원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반대함. 특히, 우리나라는 IMO가 파견전문가에 대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IMO의 비용은 결국 정기에산으로부터 나와야 하므로 파견전문가를 보내지 않는 국가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러 국가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논의 결과, 이사회는 스페인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차별 원칙”만을 제외하고 채택하지 않기로 함

2. 향후 IMO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계획 개발

- **(개요)** 제27차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IMO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계획의 개발 및 제출(이사회)을 요청함. 또한, 기구가 지속해서 안전, 보안, 해상교통 간소화, 환경 사안 및 이와 관련된 법률적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재고 조치를 발굴하도록 요청함
- 사무총장은 기구의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계획 개발을 비용절감 및 효과성 증대와 함께 검토 및 개선 목표 중의 하나로 포함함
- 사무총장은 제108차 이사회에 동 장기계획의 개발 개요를 제공함
- 사무총장은 제108차 이사회에 동 장기계획의 개발 개요를 제공함
- **(회의결과)** 향후 10년간 IMO의 예산 증가 수준을 Zero nominal growth(ZNG)와 Zero real growth(ZRG) 사이의 “Mixed Zero Growth”로 설정하려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하여, 캐나다, 독일, U.S 등 여러 국가는 ZNG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하여 지지함. 논의 결과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MZG 시나리오를 따라 향후 예산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독려함
- 우리나라는 전문직 직급별(D 및 P level) 인원수, front office 및 back office의 적절한 인원 배분, shared service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고정 직원 비용(staff cost)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함
- 사무국이 제안한 장기 예산 전망 시나리오 승인 - Mixed Zero Growth*에 대한 미국 등 유럽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국(우리나라 포함)의 지지로 사무국 제안 원칙적 승인

- * 물가상승 등 자연적인 예산증가 요인과 조직 개편/수익개선 등에 의한 지출감소를 상호 연계하여 예상한 예산 증가 시나리오

의제 5 |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1. 감사제도의 이행에 관한 경과보고

- **(개요)** 이 문서는 지난 108차 이사회 이후 회원국 감사제도의 이행에 관한 경과를 보고하는 문서임
- **(회의결과)** 감사를 받지 않은 회원국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감사계획을 세울 것을 독려함. 또한, 각 회원국이 자질 있는 감사관들을 임명하기를 촉구하였음
- 감사제도 참가를 원하는 회원국에 대한 ITCP 프로그램 지원신청을 독려하였음
- 싱가포르, 라이베리아는 자국이 주관한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지역 워크숍을 소개함
- 몰타는 감사를 받는 회원국의 수가 증가하면 사무국의 업무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어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사무총장은 IMO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 계획(C109/4(e))에 동 사안이 반영되어 있음을 언급함

2. 강제회원국 감사제도 측면에서의 기밀성

- **(개요)** 강제회원국 감사제도 측면에서의 기밀성에 대하여 배경을 제공하고 MSC 90 및 MEPC 64에서 검토된 사안에 관하여 보고하는 문서임
- MSC 90 및 MEPC 64는 감사보고서의 기밀성 및 보고서 서식과 관련한 JWGMSA 5 회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함. 또한, ‘요약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계획의 이행

진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공개할 경우, 이러한 공개가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MSC 및 MEPC 또는 협약 당사국의 역할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함.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많은 나라가 IMO 강제협약의 이행에 회원국의 역량 및 전반적인 이행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원조의 제공을 통해 회원국들을 추가로 원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감사보고서가 제공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또한, 여러 국가는 회원국의 주권 및 국가 간 관습에서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함

- 많은 나라가 감사보고서의 기밀성과 관련하여, 투명성 및 감사보고서가 공개 필요성에 동의 하였음. '요약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 감사결과(MSC 90/22/3 문서 상 서식형태)'와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진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공개 된다 하더라도 회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위원회의 업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 동의함

○ 이사회에서의 요청사항

- '감사 요약보고서'가 자동으로 공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감사국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공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또한, 이러한 공개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지 회원국에 한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 '시정조치계획의 이행 진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자동으로 공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감사국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또한, 이러한 공개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지 회원국에 한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 (회의결과) '감사 요약보고서' 및 '시정조치계획의

이행 진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의 공개 방법 및 대상에 대한 논쟁이 이뤄졌으며, EU 국가들, 라이베리아, 싱가포르, 러시아, U.S, 캐나다 등은 자동으로 일반에의 공개를 지지하였으며, 파나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피감사국의 사전승인 전제로 한 회원국에 만의 공개를 지지함

○ 자동 및 일반에의 공개를 지지하는 측이 약간 많았으나, 의장은 회원국 감사제도가 자발적인 현재 단계에서는 피감사국의 사전승인 전제로 회원국에만 공개하기로 하고, 2015년에 감사 제도가 강제화됨을 고려해 동 사안에 대해 지속 해서 검토하기로 함

⇒ 무조건 일반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회원국의 주권침해 여부에 대한 계속된 검토를 병행하기로 결정

- 일부 개도국들이 감사결과공개를 강하게 거부하므로 회원국의 주권보호 차원에서 공개 여부 결정을 사실상 유보함

의제 6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보고서 검토

1. 감사제도의 이행에 관한 경과보고

○ (개요) 제64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임

○ 강제 법규 개정안 채택 참조

- IBC Code 2012 개정안 관련 결의서 MEPC. 225(64) 채택. 2014년 06월 1일 발효 예상

○ 선박평형수 내 유해 수중생물 관련 위원회 결정 참조

- 활성화 물질(Active Substances)을 이용한 선박평형수 관리 시스템 중 3개는 일차 승인 그리고 5개는 최종 승인

- 위원회는 BWM 협약 D-2 규정에 포함된 기준을

-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들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
- 협약 19조의 개정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28차 총회 채택을 위한 결의서 개발을 통해 BMW 협약의 B-3 규정시행에 관한 산업계의 우려를 언급하는데 동의
 - 위원회는 BMW협약 발효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점진적 도입기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협약발효 전 선박평형수 관리 증서 발급 및 선박평형수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BMW.2/Circ.40을 배포하는데 동의함
 - 위원회는 형식승인을 마친 28개의 선박평형수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고, BMW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모든 회원국에 이른 시일에 가입하도록 촉구
- 선박 재활용 관련 결정사항 참조
- 위원회는 MEPC.222(64) 홍콩 협약에 의거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2012년 지침 및 선박 검사를 위한 MEPC.223(64)을 채택함
 - 위원회는 2011년 유해물질 목록 개발에 관한 지침서의 개정 필요성 검토 및 유해 물질 목록에 기재될 물질에 대한 한계치 및 면제항목 개발을 위해 회기간 통신작업반 설치
-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결정사항 참조
-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결의서를 추가 개발하였고, 65차 MEPC에서 본 문서를 기초로 결의서를 최종 마무리하는데 동의
 - 2013년 1월 1일 발효되는 MARPOL 4장 개정안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2012년 신조선에 대한 EEDI 계산법 지침 개정안을 담은 MEPC 224(64)결의서 채택
 - 아래 사항 승인
 - 1) 2012년 EEDI 검사 및 증서에 관한 지침의
- 주석 2 개정안
- 2) 6개 통일 해석 - “신조선”, “주요협약”, “SEEMP”, “과일류스 전용운반선에 적용되는 적절한 분류”, “IAPP 증서 보충사항”, “선박 소각기”
 - 3) 불리한 조건 하에서 선박 조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기관출력 잠정기준 관련 MEPC -MSC 초안; 91차 MSC에서 동시 결정하는 조건
 - 4) 시운전 시 대표적인 해상 요건하에서 선속 감소를 위한 지수 fw 산정 잠정지침
-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위원회 결정사항 참조
- 국제 항행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요 업데이트 및 추가적인 검토를 위한 2013년 전문가 워크숍 개최 동의안 확인
 - 선박 온실가스의 시장기반 조치 관련 제안 사항은 MEPC 65차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동의
- MARPOL 그리고 관련 제도 해석 및 개정
- 아래 사항 승인
 - 1) MEPC.1/Circ.791 -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MARPOL 부속서 5장에 의거 고체 산적화물의 잠정 분류
 - 2) MEPC 65차에서 채택을 목표로 MARPOL 부속서 1장 IOPP 부록 FORM A, B 개정 초안
- 전문위원회 보고
- BLG 16차 : MEPC.1/Circ.761/Rev.1 그리고 MEPC.1/Circ.792 승인
 - DE 56차 : 상태평가계획(CAS) 개정안 승인 및 MEPC.227(64) 채택
 - STW 43차 : MSC 91차 동시 결정을 전제로 아래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 1) 행정당국의 ISM 시행 관련 개정 지침 및 선상

- 비상계획의 통합 시스템 구축 관련 개정 지침
- 2) 회사의 ISM 코드 운영 지침에 관한 개정된 MEPC-MSC 회람문
- FSI 20차 : 91차 MSC 동시 결정을 조건으로 아래 사항 승인
 - 1) III 코드관련 총회 결의서 초안 및 MEPC 66차 채택을 전제로 III 코드 강제화를 위한 MARPOL 개정 초안 승인
 - 2) MEPC 65차 채택을 전제로 RO코드 초안 및 RO 코드 강제화를 위한 MARPOL 개정 초안 승인
- 특별 민감 지역(PSSA)으로 SABA BANK 지정
- 91차 MSC 동시 결정을 전제로 2014~15년 위원회 및 부속 기관의 활동, 우선 사항, 회의 기간(WEEK 기준)에 관한 위원회의 제안 확증
- 총합계(WEEKS) 25주
- RIO+20 그리고 사무총장이 정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8가지 참조
- 기타 사항 참조 및 승인
 - MEPC 2012-13 계획결과(Planned output) 현황 보고 승인
 - 이사회 동의를 조건으로 회기간 작업회의 개최 동의
 - 1) OPR/HNS 기술 그룹; 2013년 5월 MEPC 65차 일주일 전 개최
 - 2) ESPH 작업반; 2013년 10월 개최
- **(회의결과)** 이사회는 OPRC/HNS 기술작업반 및 ESPH 작업반의 2013년 개최를 승인하였으며 MEPC64 회의결과에 대하여 주목함
- 인도는 WTO 규정과 MBM간의 상충 가능성 (MEPC 64/5/3)에 대하여 언급하며 IMO 사무국에 WTO 사무국과의 상호연락체계를 구성해 동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무총장은 현 단계에서 두 기구 간의 상호

연락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 이른 조치이며,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해 WTO로부터 의견(initial view)을 받아 보고하기로 함

- 바하마는 BWM 협약이 발효하게 될 경우 PSC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MEPC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파나마, 일본 등은 이러한 바하마의 의견에 대하여 지지함. 이사회는 바하마의 요청대로 MEPC에 BWM 협약 발효 시 예상되는 PSC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찾으려 촉구하기로 결정함

의제 8	1977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에 관한 1993 의정서 이행 협정의 채택을 위한 2012 외교회의 보고서
------	---

1. 199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을 위한 협정서 채택 외교회의 보고
 - **(개요)** 이 문서는 어선안전에 관한 2012 케이프타운 외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으나 각국의 수락 저조로 발효되지 못함
 - 이에 동 협약을 전면 개정한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1993년 채택하였으나 이 또한 발효요건을 현재까지 충족시키지 못함
 - 93 의정서에 대한 주요 어업 국의 수락 확대를 위해 IMO는 의정서 요건을 완화한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 채택 및 결정을 위한 케이프타운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10월 9일~1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어선안전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58개국이 참석

하여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 시행을 위한 최종 협정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54개국이 서명함

※ 최종 협정서 명을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규정 시행을 위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로 하기로 정함

- 본 협정서는 협정서 4조 1항에 의거 22개국 이상이 협정서에 구속되기로 동의하고, 그들 국적의 24m 이상 공해 상 활동 중인 어선 척수가 3,600척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됨
- 외교회의에서는 협정서 채택과 더불어 하기의 결의서 또한 채택함
 - 회의 결의서 1 (협정서의 조기 시행) 채택
 - 회의 결의서 2 (두 조약이 상충하여 운영되는 상황의 방지) 채택
 - 회의 결의서 3 (기술적 협조 촉진과 기술적 지원의 공급) 채택
 - 회의 결의서 4 (통합 문서 준비) 채택
 - 회의 결의서 5 (수탁자에 의한 체약국 어선 척수 계산 과정) 채택
 - 회의 결의서 6 (개최국에 대한 감사) 채택
- 최종 협정서 20단락의 규정에 의거 사무총장은 최종 협정서 및 개정안 공식 사본을 각 국가 정부에 보내기로 요청됨
- **(회의결과)** 일본, 호주, 칠레, 노르웨이 등은

성공적인 회의에 대하여 개최국인 남아공에 감사를 표명함

- 이사회는 회의 결과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사무총장에게 협정서 공식 사본을 보내도록 권한을 위임함

기타사항

1. 행정부담경감을 위한 설문조사 시범실시방안 마련

- '13. 3월 시행을 목표로 협약적용 대상자(선원, 선사, 행정기관 등)에 대한 인터넷 기반 설문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
 - 세부 방식은 운영그룹(우리나라 김현태 과장 포함)에서 완성하기로 함
 - 시범실시결과를 반영하여 '13. 9월 본격 설문 조사 시행하고, '15년 조사결과를 관련 규정의 개선(개정, 삭제 등) 작업 개시 예정

2. NGO의 IMO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 모호한 용어의 통일된 해석지침 개발 및 공평한 등록심사절차 확립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함
 - 유럽 위주의 NGO 등록을 제한, 아시아국의 NGO 참여권 확보
 - 무분별한 NGO의 등록을 제한해 IMO 회의가 회원국 간의 회의로 진행되는 근거 마련